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9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강대식 · 강선영 · 김기현

성일종 · 구자근 · 박덕흠

윤상현 · 안철수 · 신동욱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단지와 관련한 범죄를 현행법 제288조 등에 의하여 약취·유인의 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범죄단지 사례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후 범죄 수행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이에 해당되기 곤란함. 또한 현행법 제289조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범죄단지 관련 범죄는 매매대금 등의 수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신매매죄로 처벌하

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

한편 범죄단지 관련 피해자 등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책임의 조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하여는 감면 가능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폭행·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현행법 제2편제31장)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및 제296조의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1항 중 “약취 또는 유인”을 “약취·유인하거나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모집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취 또는 유인한”을 “약취·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을 “약취·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 사람과 약취·유인 또는 모집등이 된”으로, “사람도”를 “사람은”으로 한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제2편 제31장에 제2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6조의3(피해자가 범한 범죄에 관한 특례) 이 장의 범죄의 피해자

가 이 장의 범죄에 수반하는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인하여 범하거나 이 장의 범죄에 수반하는 체포·감금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편제31장의 범죄의 피해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u>약취</u> 또는 <u>유인</u>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 ----- <u>약취</u> · <u>유인</u> 하거나 <u>모집</u> · <u>운송</u> · <u>전달</u> · <u>은닉</u> · <u>인계</u> · <u>인수</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u>모집</u> · <u>운송</u> · <u>전달</u> · <u>은닉</u> · <u>인계</u> · <u>인수</u>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모집등”이라 한다)----- -----.
<신 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 · 감금 또는 <u>약취</u> · <u>유인</u> · <u>매매</u> 하는 행위
<신 설>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신 설>	3.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 ·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② -----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약취·유인하거나 모집
등을 한-----
-----.

③ -----
-----약취·유인하거나 모집등
을 한 사람과 약취·유인 또는
모집등이 된-----
-----사람은-----
-----.

제296조의3(피해자가 범한 범죄
에 관한 특례) 이 장의 범죄의
피해자가 이 장의 범죄에 수반
하는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인하여 범하거나 이 장의 범죄
에 수반하는 체포·감금 상태
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